

2026

소방관계법규1

고득점 소방기본법

엠북 소방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종합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★ 37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고득점 소방기본법

ISBN : 979-11-7393-105-5

발간일 : 2025-11-10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6,500원



소방기본법

[목차]

제1장 총칙(p6)

제2장 소방장비 등(p19)

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(p31)

제4장 소방활동 등(p31)

제5장 화재의 조사(p56)

제6장 구조 및 구급(p56)

제7장 의용소방대(p56)

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 등(p56)

제8장 한국소방안전원(p59)

제9장 보칙(p63)

제10장 벌칙(p72~77)

[약어]

- 청장은 소방청장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소방관서는 소방청, 소방본부, 소방서
- 관서장은 소방관서장(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)
- 대원은 소방대원
- 소방차는 소방자동차
- 안전원은 한국소방안전원
- 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

- 대상물은 소방대상물 또는 대상물
- 위급상황은 화재, 재난/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방법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붉은색은 시행예정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된 내용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7조

1. 목적

- 화재 예방/경계/진압
- 위급상황 구조/구급
- 국민 보호
- 공공 안녕/질서 유지, 복리증진

2. 정의

가) 소방대상물은 건축물, 차량, 항구에 매어둔 선박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, 인공 구조물, 물건

나) 관계지역은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이웃 지역

- 화재 예방, 경계, 진압, 구조, 구급 필요

다) 관계인은 대상물 **소**유자, **관**리자, **점**유자

라) 소방본부장(이하 **본부장**)은 시도 화재 예방, 경계, 진압, 조사, 구조, 구급 업무 담당 부서 장

마) 소방대는 화재 진압, 위급상황 구조/구급

- 소방공무원, **의무**소방원, **의용**소방대원

바) 소방대장(이하 **대장**)은 본부장,

소방서장(이하 **서장**) 등 위급 현장에서 소방대 지휘

3. 국가/지자체의 책무

- 위급상황에서 국민보호 시책 수립/시행

4. 소방기관의 설치 등

가) 시도 소방기관

- 대통령령(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)으로 정함

나) 본부장/서장은 소재지 시도지사가 지휘/감독

- 청장은 필요시 지휘/감독 가능

다) 시도 소방업무 위해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 둠

- 소방업무는

·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

· 소방안전교육/홍보

· 위급상황 구조/구급

5. 소방공무원 배치

- 제주도 포함, 시도 소방기관과 소방본부에 지방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'지자체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'에 따라 소방공무원 둘 수 있다

6. 119종합상황실(이하 상황실)

가. 설치

1) 관서장은 설치/운영 의무

a) 구조/구급 필요 위급상황시,

-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,
- 정보 수집/분석, 판단/전파, 상황관리, 현장 지휘, 조정/통제

b) 소방청, 시도 본부, 소방서에 각각
설치/운영

c) 전산/통신요원 배치, 유무선통신시설 구비

d) 24시간 운영

2) **소방본부(이하 본부)** 상황실에 경찰 둘 수 있다

나. 실장

1) 상황실 근무자 중 최고직위

- 최고직위가 2인이상이면 선임자

2) 업무

- 재난 신고접수
- 인력/장비요청 등 사고수습
- 출동지령, 지원요청
- 재난상황 전파/보고
- 현장지휘, 피해파악
- 수습 정보수집/제공

다. 상황 보고 (대상)

- 소방서는 본부, 본부는 소방청 상황실에 지체없이 서면, 팩스, 컴퓨터통신 등 보고

1) 다음 화재

- 사망 5, 사상 10, 이재민 100인 이상

- 재산피해 50억 이상
- 관공서, 학교, 정부미도정공장, 문화재, 지하철, 지하구
- 관광호텔, 11층 이상, 지하상가, 시장, 백화점, 15,000 제곱미터 이상 공장, 화재예방강화지구
-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제조, 저장, 취급소
- 5층 이상 또는 객실(병상) 30실(30개) 이상 숙박시설, 병원, 요양소
- 철도차량, 항구에 매어둔 1천톤 이상 선박, 항공기, 발전소, 변전소, 가스/화약 폭발
- 다중이용업소

2) 통제단장의 현장지휘 필요

3) 언론 보도

4) 청장이 정하는 상황

7. 소방정보통신망

- 청장/시도지사는 상황실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축/운영 가능
- 회선 이중화 가능
-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
요

8. 소방기술민원센터

- 가) 청장/본부장이 각각 설치/운영
- 센터장 포함 18명내
- 나) (기술민원) 업무
- 민원 종합 접수/처리

· 소방시설, 소방공사, 위험물 안전관리
법령해석 등

- 질의회신집/해설서 발간
- 정보시스템 운영/관리
- 현장확인
- 청장/본부장 지시 업무

다) 청장/본부장은 관계기관장에 공무원/직원
파견 요청

라) 이외는 소방청에 설치시 청장, 본부에
설치시 시도 규칙으로 정함

9. 소방박물관

- 청장이 행안부령으로 설립/운영할 수 있고,
필요사항 정함

- 관장/부관장 각 1인
- 관장은 소방공무원중 청장이 임명
- 국내외 역사, 복장/장비 등 수집/전시
- 7인내 운영위 둠

10. 소방체험관

- 시도지사가 조례로 설립/운영할 수 있고, 필요사항 정함
- 재난/사고 예방/대응 교육
- 교육 프로그램 개발, 홍보/전시
- 교육인력 양성, 유관기관/단체 협력
- 시도지사 인정 사업 수행

11.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